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76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한정애·김재원·이용우

조인철 · 김영배 · 이재강

서삼석 · 권칠승 · 박희승

송옥주·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 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 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	한 감면) ①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면	<u>2029년 12월 31일</u>
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	
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	
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u> 까	<u>2029년 12월 31일</u>
지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	2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9년 12월 31일</u>
면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저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 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③ (현행과 같음)
∥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u>2029년 12월 31</u>
<u>일</u>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 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4. (생략)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 3. (생략)
- ③・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
2029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